

의안번호	2219707
의 퇴 인	이종배 의원
회 답 일	2026.8.11.
추 계 번호	26B32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u>한다</u> .(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u>일 단위로 나누어</u> 사용할 수 있다. <u>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안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²⁾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한 현행법상 규정을 삭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인원과 사용시간 및 기간이 변화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 73조의2³⁾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유인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나, 현시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요건 완화에 따라 향후 달라질 사용인원과 이들의 사용시간 및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함

3)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인원 및 사용시간 및 기간 등이 변화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태 변화를 사전에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개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용인원	16,685	19,466	23,188	26,625	39,400
집행액	89,669	107,330	130,324	157,970	228,185
사용기간	9.4	9.4	9.3	9.0	9.8

자료: 고용노동부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